

동작구의회공고 제2019-3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심리적·정서적·경제적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가족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장애인 가족 지원시설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우리구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증진에 일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 가족을 위한 종합 시책 마련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나.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안 제4조)
- 다.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안 제5조)
- 라.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안 제6조)
- 마. 수행기관에 관한 지도·감독 (안 제7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 (전화 : 820-1323, FAX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이하 “수행기관”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